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기간제 근로자(운전원) 최종 합격자 공고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(운전원)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1. 11.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

1. 최종 합격자 명단 (1명)

분 야	응 시 번 호	성 명(생월일)
운전원	운전-2	이 ○ 동 (0928)

2. 합격자 제출 서류

○ 최종합격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2022 11. 16(수) 18:00까지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민등록 등·초본 1부(주민등록번호 식별가능하도록 출력)

나. 기본증명서 1부(상세증명서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 식별가능하도록 출력)

다. 최종학력증명서 1부

라.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마. 채용 신체검사서(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부, 서식 참조)

바. 사진(반명합판) 2장

※ 임용예정일 : '22. 11. 21. (예정)

3. 유의사항
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【11.16(수) 18:00 까지】
 - 등기우편 주소 : (우) 0318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, 에스타워 16층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팀 인사담당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·응시자격 조회,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는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(☎ 02-6260-12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〈서식〉

(앞쪽)

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사 진 (3cm × 4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(한 자) ()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가슴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) 우: ()
안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치 아		호 흡 기 질 환	
간 질 환		신 경 질 환	
소 화 기 질 환		피 부 질 환	
순 환 기 질 환		정 신 질 환	
비 뇨 기 질 환		혈청검사(매독)	
흉부 X선 검사		기 타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인)

검사 결과	[] 합 격	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
합격 여부	[] 불 합 격	
	[] 판 정 보 류	
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

(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210mm × 297mm(보존용지 80g/㎡)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국가기후환경회의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에디터, 사무보조, 운전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[의료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“검사 내용”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“정상”, “양호”, “이상 없음” 등으로 적어야 함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“합격” 또는 “불합격” 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3. “검사 결과 합격 여부”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“√”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‘만성골수성백혈병’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- ‘매독(syphilis)’ 양성으로 나타나나,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
 -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 에 해당하지 않음
 - 나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.1, 오른쪽 0.1
 -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(microliter)당 6만개 이하인 ‘혈소판 감소 자색반’ 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
 - ※ 판정 보류 사유: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